

#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 출신 소영철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지난 8월 3일, 분당 서현역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한 칼부림으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. 19일에는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흥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.

□ 이후로도 혜화역, 왕십리역, 신림역 등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칼부림 예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흥기 난동을 오인한 승객들이 대피하다 서로 밟고 넘어지며 다치기도 하는 등 무

차별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입니다.

- 반면 공사가 갖추고 있는 장비(전자 호루라기, 후추 스프레이, 전자충격기, 방검복, 가스총 등)는 흥기 난동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가 여전하고, 법령 및 조례상 근거가 전무합니다.
- 이에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흥기 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여객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실에 구비·비치하도록 하는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-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주먹구구식 장비 도입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흥기 난동 대응에 적절한 안전장비를 갖추으로써,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장님,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 부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으로 심의,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